[별표 4의5] <신설 2014.6.10>

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(제15조제13항 관련)

1. 주제동장치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상발생 등으로 발생한 제동력 편차에 대한 제어계통 보상값이 아래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고장치에 따른 황색경고를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.

구 분	한계값
차륜	좌·우 차륜의 브레이크 제동압력 중의 높은 값 : 25%
차축	각 차축의 정상상태 제동력과의 차이값 : 50%

2. 운전자의 의지에 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3. 주차제동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시동장치의 전원이 꺼진 후 1분 이내에 3회의 주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을 때까지는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따른 제동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4. 주차제동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시동장치의 전원이 꺼진 후 1분 이내에 최소 4회 이상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킬 때 또는 1분이 경과한 후 최소 1회 이상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킬 때에는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따른 제동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5.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부품이나 기능의 고장으로 제동장치의 성능에 영향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장치에 따른 경고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규정된 제동성능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색경고를 주어야 한다.
6.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부품 또는 기능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7.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0회 작동한 후 21회 작동 시 제동력, 제동압력 또는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출력값은 정상적인 제동작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8. 축전지 전압 강하에 따라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

또는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저해될 경우에 사전에 적색경고등을 점등하여야 하며, 경고등 점등 후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